

제13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

1. 회의일시 : 2010. 3. 15.(월) 15:05
2. 장 소 : 방송통신위원회 14층 회의실
3. 참석위원 : 최시중 위 원 장
이경자 부위원장
송도균 위 원
형태근 위 원 (4인)
4. 불참위원 : 없 음
5. 회의내용
 - 가. 성원보고
 - 나. 국민의례
 - 다. 개회선언
 - 라. 회의공개여부 결정
 - 마. 전차회의록 확인

바. 기 타

1) 한국방송공사, (주)문화방송, (주)에스비에스의 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피심인 의견진술

- 김대희 이용자보호국장으로부터 “한국방송공사, (주)문화방송, (주)에스비에스의 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 위반”에 대한 조사경과를 보고받고, 피심인들(한국방송공사, (주)문화방송, (주)에스비에스)의 의견진술을 청취함

○ 주요내용

① 사건경위

- KBS·MBC는 '10~'16년 간의 올림픽·월드컵 독점 중계권을 확보('06. 6월~'06. 8월)한 SBS에 대해, 정당한 사유 없이 중계권 판매를 거부·지연시키고 있다고 방통위에 신고('10. 1. 26)
- 한편, 방통위는 KBS·MBC가 SBS로부터 위 올림픽·월드컵 중계권의 구매를 거부하거나 지연시켰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('10. 2. 4.)

② 피심인 의견

- **(KBS·MBC·SBS)** 상대방이 비합리적인 주장만을 고집하였기 때문에 협상 과정에서 대안 제시가 미흡했던 것이므로,
·대안 제시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‘중계권 판매·구매 거부’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’고 판단할 수 없음
- **(KBS·SBS)** 전체 협상기간을 하나로 고려하여 판매자 또는 구매자의 성실한 협상 여부를 판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,
·협상경과를 자의적으로 분류한 후 일정기간(SBS는 '09. 12월 이후, KBS는 '07. 4월~'09. 12월) 동안 성실하게 협상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것은 부당
- **(SBS)** 방송법상 기준인 국민 전체가구 수의 90% 이상을 초과하는 방송수단을 확보하여 보편적 시청권이 보장된 이상, 정당한 사유 없는 판매 거부는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함
·또한, 방송수단이 충분히 확보된 상황에서 중계권 재판매는 보편적 시청권 보장에 기여하는 바가 없고, 오히려 중복편성 문제만 야기

2) 차기 회의 일정에 관한 사항

- 차기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는 별도로 정하여 통보하기로 함

6. 폐 회 (19:20)

※ 16:30 정회, 16:40 속개, 17:45 정회, 17:55 속개